



“자원순환을 넘어 에너지기업으로”

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

KOREA RESOURCE-RECYCLING ENERGY MUTUAL-AID ASSOCIATION



수 신 전 조합원사 대표이사
[메일 송부 병행문서]

참 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담당

제 목 「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 취소 소송(상고심)」 진행경과(54차) 및 선고기일 알림

1. 한공조 2018-402호[「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 취소 소송(상고심)」 진행경과(53차) 및 상고이유보충서(4) 의견 제출 요청(긴급), '18.10.1] 관련입니다.

2. 「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 취소 소송」 상고심 관련 법무법인 광장에서 '18.9.7일에 신보라 의원실에서 개최된 “폐기물 소각시설 온실가스 합리적 감축방안 전문가간담회” 주요내용을 근거로 '18.10.8 상고이유보충서(4)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.

3. 이와 관련하여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열 외부 공급이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 및 화석연료 대체효과 인정, 폐기물 소각시설 온실가스 감축불가 등을 주요내용으로 '15년 2월 서울행정법원 1심부터 3년 8개월간 이어진 동 소송의 최종 선고가 '18.11.9(금) 10시 대법원 2호법정에서 있을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 임 : 선고기일통지서 1부. 끝.

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



담 당 김정훈 팀 장 한인성 사무국장 장기석 부이사장 진원기 이사장 박무홍

협조자

시행 한공조 2018 - 433호 (2018. 10. 29) 접수

우 04508 서울시 중구 중림로 50-1, 13층(만리동 1가, SKY1004빌딩) / www.krema.kr

전화 02-718-7900 전송 02-718-7171 / krema@krema.kr /비공개

대 법 원

선고기일통지서

사 건 2017두61652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 취소의 소
원 고 대일개발 주식회사 외 11명
(상 고 인)
피 고 환경부장관
(피상고인)

위 사건의 선고기일이 다음과 같이 지정되었습니다.

당사자는 선고기일에 출석할 수 있으며,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.

일시 : 2018. 11. 9. 10:00

장소 : 대법원 2호법정

2018. 10. 25.

법원사무관 이 영 표



◇ 유 의 사 항 ◇

1. 출석할 때에는 신분증을 가져오시고, 이 사건에 관하여 제출할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번호(2017두61652)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2. 법원 홈페이지(www.scourt.go.kr)를 이용하시면 재판기일 등 각종 정보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. [소송절차⇒나의 사건검색]

※ 문의사항 연락처 : 대법원 전화 : 3480-1364 팩스 :	특별1부(나) e-mail :	법원사무관 이영표
--	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